

윤리규약

[전면개정 2014.2.27]

제정 1965. 10. 23 개정 1995. 10. 24
개정 1973. 3. 24 개정 1999. 9. 14
개정 1976. 3. 26 개정 2001. 3. 29
개정 1977. 8. 30 개정 2004. 2. 26
개정 1987. 5. 21 개정 2014. 2. 27
개정 1991. 1. 1

제1조 회원은 본인(자신)에게 위탁된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한다.

제2조 회원은 업무수행 중 알게된 의뢰인의 비밀에 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제3조 회원은 의뢰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 공익에 비추어 회원의 권익과 명예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의 위임을 거부한다.

제4조 회원은 건축사의 지식과 능력으로 정당한 보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부정한 금품을 받지 않는다.

제5조 회원은 설계·감리 등 의뢰인의 업무의뢰에 따라 표준계약서 등 일반적 조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회원은 건축사 면허를 타인에게 대여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회원은 다른 회원과 의뢰인사이에 계약이 진행중인 것을 인지한 후 부당한 방법으로 그 업무를 수탁 받도록 의뢰인에게 강요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삭제 <1999. 9.14>

제9조 회원은 자기에게 의뢰된 업무의 책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고용된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 등의 건축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다.

제10조 회원은 건축재료 등 건축사업의 광고에 있어서 건축사의 명예를 손상시킬
증명서를 발부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회원은 사이버 공간이나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인신공격·욕설·비방적인 글을 게재하는 등 협회의 위상 및 다른 회원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2조 회원은 협회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 협회의 명예훼손 또는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본 윤리규약을 준수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조직한다.

제14조 회원은 윤리위원회규정에 의한 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정관 제 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6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7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7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77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87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본 규약은 서기 1995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약중 제8조 및 제10조의 삭제에 따라 윤리위원회규정(별표1) 징계조항 중 윤리규약 제8조 및 10조가 포함되는 기준은 각각 삭제한다.

제3조 본 규약중 제8조 및 제10조의 삭제에 따라 9조는 8조, 11조는 9조, 12조는 10조, 13조는 11조, 14조는 12조, 15조는 13조, 16조는 14조로 개정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1999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약은 2004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 규정 별표1의 위반내용중 동 조항이 포함되는 기준은 삭제한다.

부 칙

본 규약은 서기 2014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